

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

제24권 제3호 2023. 9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도시연구

2023. 9 제24권 제3호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김강현	1
---	-----	---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김강현*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Seoul's Gender Budgeting Gap : 25 Local 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Kang hyun Kim*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실태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다년간의 패널자료(2013년~2021년)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치구별 성인지예산 격차(전체 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율)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자치구별 수용도로 정리하였으며, 연구목적에 규명하기 위한 모형 3개를 구축하였다. 변수는 정치요인, 사회경제요인, 행정요인, 제도요인별로 도출하였으며, 모형1(GLS, 고정효과모형), 모형2(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3(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자치구에는 성인지 예산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변수 중 유의미하게 분석된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유권자 비율, 여성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외에 신규변수인 소득수준, 성평등 행정지수, 전담조직 여부, 간접목적사업 비율, 성인지 대상사업 수 등 5개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때, 성인지 예산제도가 진정성 있게 운영되기(coupling)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형식적·표면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탈피하여야 하며, 특히 성인지 예산의 직접목적 사업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수의 현실과 괴리 요인이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 수용도와 디커플링 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실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 하겠다.

주제어 :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격차, 성인지 수용도, 제도 커플링, 제도 디커플링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gender budgeting gap in 25 local 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To carry out this study, The gender gap(ratio of gender budget to total budget) by each local district of Seoul with panel data, and the organized by the acceptance of local district. 3 models were conducted and the influence factors derived by political dimension, socio-economic dimension, administrative dimension, and institutional dimension were applied to analyze the GLS model,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a gender budgeting gap in the local district of Seoul. Among the existing variables, the significantly analyzed ratio of female voters, female population, financial autonomy and recognition of institution as well as new variables such as political disposition of district leader, income level of district ar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firmed in 5 variable, including whether there was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ratio of direct purpose policy, and the number of gender budget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gender budget system is operated formally and superficially rather than genuinely(coupling) and the number of direct purpose policy and gender sensitive policies need to improved in the field.

KeyWords : gender budget, gender budget gap, gender budget acceptance, institutional coupling, institutional decoupling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bumingroup@nate.co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산은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우리사회에 증대한 손실을 미치게 된다(나라재정, 2020). 성 불평등한 예산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왜곡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구 주요국가에서는 일찍이 예산의 공정·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을 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예산제도에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의 관점을 강조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점진적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¹⁾) 개념을 활성화 시키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임성일, 2011). 우리 정부에서도 2006년 「국가재정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부터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 되면서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서대문구에서 처음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2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약 10여년의 정책

학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확산은 정책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정부주도형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전이되는 정책이전을 통한 지평확대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제도화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정부주도 사례로서 강력한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동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음은 중앙정부의 정책개발·시달 - 지자체의 집행·시행이라는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으로 특화되어 시민의 예산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자치를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양성평등의 제도목적을 위한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초안 위에 지자체별로 그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적 완성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자기학습이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주권의 시민참여가 반영된 재정민주화의 가치가 반영된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부 중심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집행 담당자인 공무원 주도로 설계되면서 성 주류화의 기술 관료화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한국성인지네트워크, 2017),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통해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김진, 2009). 특히, 서울시는 학계에서 지적되는 비합리적 예산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권, 사회기반조성, 성평등권익, 사회안전보장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1)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모든활동, 정책개발, 연구, 주장, 소통과 대화, 입법, 자원배분, 계획, 프로그램의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양성평등적 시각과 인식이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Sarraf, 2003).

이처럼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과 공정사회 가치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아 2012년부터 정책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운영(coupling)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성인지적 접근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실제적 변화는 제도설계 당시 기대했던 것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예산제도인 사업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박수범·김희경·권도연, 2016), 극단적 페니미즘 및 성인지 역차별 논란도 발생(김은희, 2020)하여 동 제도는 실무계의 성 불평등한 재정정책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목표 대비 실행의 모호성(ambiguity)으로 인해 명확한 근거를 배태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지예산이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지자체로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통한 제도적 인프라는 형성했지만, 과연 실효성 측면에서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²⁾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조사대상 156개국 중 102위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2006년의 조사결과인 92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명목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위해 국가재정의 근간인

예산제도부터 바꾸었지만 정작 우리사회의 실제적인 성 불평등 정도를 개선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책혁신은 특정한 정책분야에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양상과 범위 또한 지방정부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기도 하고, 내부적 요인에 의하기도 한다(김강현, 2021). 따라서 정책혁신이 구체화된 사례를 분석하여 특정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조망되는 정책의 혁신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고 판단된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주도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운영이 표면적으로는 정책혁신 사례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운영(coupling) 측면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제도가 의무도입이라는 제도적 압력 기조로 운영(남궁윤영 외, 2015)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별로 상이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계의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간명히 정리하면 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수혜자 확대효과,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규명하는 첫 단계는 성인지 예산제의 고질적 문제가 10여년간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인 지자체별로 상이한 정책확산과정의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우리나라의 2020년 지수는 0.687점으로 필리핀(17위, 0.784), 라오스(36위, 0.750), 태국(79위, 0.710) 보다도 낮게 조사됨.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책확산 사례로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이자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자치구 간 성인지예산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채택이 정책학적으로 설명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제도의 혁신 매커니즘 동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요약컨대 이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실무계 담당자의 몫으로 미루어두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책도입·확산과 영향요인의 명제를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성인지 예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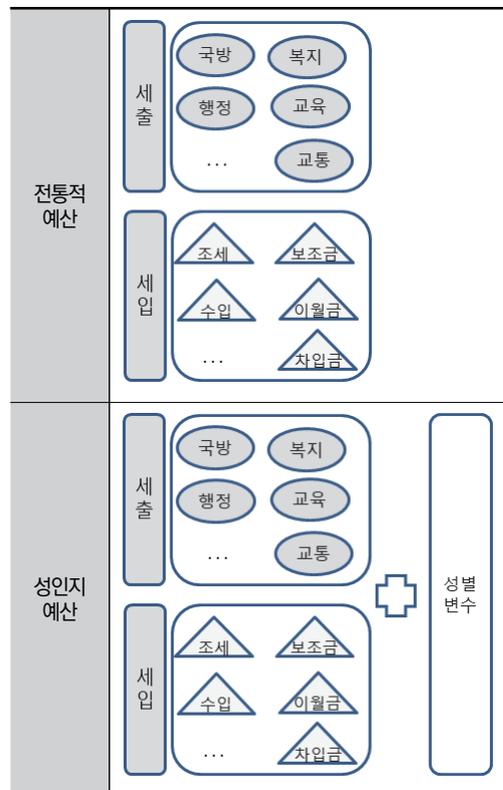
1) 개념 및 제도화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는 예산이 성 중립적(neutral)이지 않다는 가정, 즉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정동규, 2010).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으며, 예산상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

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차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20)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법」 제16조의 1 및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 2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한 자원배분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³⁾.

〈그림 1〉 전통적 예산과 성인지 예산의 비교



출처: 연구자 작성

3)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 2: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제도는 정책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의도하지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가·사회적으로 갈등과 손실을 초래(김강현, 2020)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립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 정부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와 의 관계는 어떻게? 예산은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편성과정에서는 가구(가구규모별), 소득(소득재분배), 지역(지역균형발전), 인구특성(연령), 지역특성(지리·지형) 등 인구사회적 변수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남성과 여성 등 성별 구분 변수(gender variables)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전통적인 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예산의 편성에 주안점을 둔 반면, 성별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권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중요한 씬스미인 예산에서 발생해온 성별편차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전 예산과정에 변화가 발생하였다(임성일, 2011). 그러나 이형우·김규옥(2011)에 의하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었지만 우리사회의 성불평등 정도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박은순·하태수(2018)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표면적으로만 제도도입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미비와 형식적 운영, 이해부족 등으로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 성별 격차 해소효과가 미흡한 사업이 선정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선형적 제도화(예: 성인지 예산조례)로는

해소가 어려운 실정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산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며 형식적 도입과 실질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다짐하는 이원적 제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7년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인지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성인지 예산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서울특별시에서도 2021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나 2022년 5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인지예산 실효성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한 곳(동작구)에 불과하다.

2)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4년 제정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예산(Women's budget)을 시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운영되다가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요 여성정책 중 하나로 2022년 현재 92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참여정부에서 재정개혁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성인지예산제 도입을 의무화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수행여건을 분석⁴⁾하고, 2012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편성한 성인지 예산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표 1〉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경과

연도	내용
1998	• 여성단체의 예산운동 일환으로 전체 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안 예산안' 제출
2002	•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성인지적 예산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여성관련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 채택
2003	• 기획예산처에서 보육예산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
2006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제출조항 마련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2007	• 서울시 女幸 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정책 출범
2009	•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최초 작성
2010	•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제출조항 마련(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2011	• 서울시 女幸 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6대 분야 사업추진 및 서울연구원의 성인지예산 정책연구(배준식 외, 2011) 수행
2021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0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전체 사업: 35개 기관 284개 세부사업 - 직접목적 사업: 20개 기관 89개 세부사업, 11조 8,233억원(전체 예산 513.5조원 대비 2.3% 편성) - 간접목적 사업: 33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

출처: 연구자 정리

분석한 결과 2013년 735개 사업에서 2021년 1,030개로 약 1.41배 증가하였고, 예산규모 또한 6,083억원에서 2021년 9,589억원으로 약 1.58배 증가했다. 이밖에도 일반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인 성인지예산 수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큰 편차(성인지예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성인지예산 수용도로 정의하면 2021년 기준 성인지예산 비율은 중랑구가 24.16%인 반면, 노원구는 1.10%에 그쳤고, 성인지예산 사업건수 기준으로도 성북구는 96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송파구는 19개 사업에 불과했다. 물론 예산비율과 사업건수가 제도 실효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성인

지 증진과 무관한 사업이 성인지 예산 항목에 포함 되어 있어 예산운용 실효가 적실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어떤 요인이 성인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정책수립 차원에서 필요한 학문적 과제라 판단된다.

2. 제도도입과 확산

제도도입(institutional introduction)은 특정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실천양식(practice)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의미한다(Strang and

4) 서울시 출연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9년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배준식 외) 연구수행

5) 2021년 일반예산대비 성인지 예산액 비율(24.16%)인 성인지 예산 수용도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중랑구의 경우 성차별 극복과 양성 평등을 위한 제도목적과 달리 일반 기반시설 유지·관리(예: 중랑천 조경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은평구(예: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사업), 컬처노믹스 은평구현사업 등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고, 서초구(예: 가로수 정비사업, 뜨개질 수업, 노인 무료급식), 강동구(예: 도시양육교육사업) 등도 적실성이 낮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Meyer, 1993). 이처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확산되는 일련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은 크게 합리적 선택과 제도론적 동형화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강현, 2021). 먼저, 합리적 선택은 전략적 관점으로서 조직이 채택하는 합리적 적응성을 강조한다. 즉, 조직구조가 환경 등 상황맥락에 적합하면 성과가 높을 것이고, 조직은 그러한 구조를 유지하지만,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성과가 낮을 것이므로 조직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Chandler, 1962; Woodward, 1965; Perrow, 1967; Donaldson, 1996; 노용진 외, 2003; 김강현, 2012). 따라서 특정제도의 성과가 높은 경우 조직은 해당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수용할 것이고 이는 조직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형화 관점에서도 일견 맥을 같이한다. 제도론적 동형화는 조직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행태를 닮아감으로써 외부적으로도 그럴듯한 조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조직의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종범, 1986). 이런 관점에서 조직내에서의 제도는 Jepperson(199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 정치제도(regime), 문화(culture) 등을 통해 촉진되고, 상위조직으로부터의 압력, 지시, 제도화된 정책,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문화적 신념 등에 의해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목적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특정 제도가 도입·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동인(動因)을 갖추어야 한다(김강현, 2021). 제도확산을 설명하는 현상학적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성 차별적으로 차이를 무시한 채 운용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예산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인지예산제의 도입은 정책수단적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yland(2005)가 주창한 바와 같이 정책도입에서는 성공적 사례의 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신선하고 혁신적인 시민참여형 수단의 출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ies)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김강현, 2012). 조직론적으로 서울시라는 조직입장에서 특정 문제발생시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해소가 안되는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런 탐색과정에서 다른 조직이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즉, 다른 조직에서 도입한 정책수단이 성공적이라면 이를 자신의 조직에 도입하는 것이 대안탐색비용과 시행착오(trial and error)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성공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이 수행하는 성공적이거나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정책대안을 다른 조직이 모방·수용하고 이 대안을 또 다른 조직들이 반복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정책대안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이정철·허만형, 2016). 요약컨대, 정책확산은 Berry and Berry(1990)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특정 정책을 채택한 지역과 인접한 다른 지역이 유사성을 갖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들이 해당 정책을 모방하여 도입하면서 확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상호의존적 관계(Gilardi, 2016)로 발전하게 되는 거버넌스 관계를 보이는 것도 정책적용 양상에서 발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2〉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실태

구분	도입 시기	서울시 자치구별 실태 패널 데이터(대상사업수 및 성인지예산 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강북구	2013	15개	21개	22개	30개	45개	43개	35개	36개	35개
		1.88%	2.27%	2.18%	2.06%	3.13%	4.55%	5.68%	3.32%	1.21%
강남구	2013	35개	36개	23개	42개	34개	32개	38개	39개	38개
		4.85%	5.47%	4.54%	5.59%	2.90%	2.94%	2.12%	3.25%	3.32%
강동구	2015	-	-	47개	43개	46개	52개	40개	48개	31개
		-	-	3.32%	2.19%	3.29%	4.18%	5.93%	9.55%	3.79%
강서구	2012	20개	27개	28개	25개	28개	35개	32개	35개	28개
		1.27%	3.75%	3.58%	1.22%	5.46%	3.56%	2.53%	1.72%	1.40%
관악구	2012	26개	23개	34개	36개	34개	35개	32개	31개	36개
		4.05%	5.14%	7.72%	5.47%	4.58%	4.33%	4.34%	7.03%	8.32%
광진구	2013	24개	26개	38개	33개	34개	43개	40개	45개	50개
		2.53%	3.26%	4.56%	4.22%	4.46%	5.67%	6.02%	6.52%	4.87%
구로구	2013	36개	34개	35개	30개	40개	32개	36개	30개	37개
		21.66%	13.89%	17.04%	3.51%	3.40%	3.88%	3.86%	1.84%	2.39%
금천구	2013	37개	42개	39개	40개	26개	15개	18개	26개	29개
		1.90%	4.46%	2.16%	5.07%	2.12%	1.39%	1.88%	3.40%	4.79%
노원구	2012	35개	32개	30개	46개	39개	24개	23개	24개	24개
		3.44%	2.33%	0.84%	5.42%	2.72%	2.15%	3.65%	2.55%	1.10%
동대문구	2013	37개	41개	32개	42개	35개	33개	44개	48개	53개
		21.88%	23.21%	7.42%	19.78%	5.83%	7.48%	4.20%	4.46%	6.35%
도봉구	2012	11개	18개	25개	39개	40개	42개	43개	38개	33개
		3.59%	6.37%	5.97%	7.69%	4.62%	4.34%	4.28%	4.14%	4.13%
동작구	2012	40개	61개	43개	37개	38개	39개	26개	30개	34개
		22.38%	23.77%	19.83%	14.90%	11.28%	9.86%	8.12%	8.01%	7.15%
마포구	2012	30개	27개	24개	26개	27개	25개	28개	31개	50개
		1.63%	1.25%	2.36%	2.14%	1.39%	1.86%	3.74%	2.92%	4.12%
서초구	2013	39개	54개	40개	29개	42개	71개	80개	33개	37개
		11.93%	10.74%	5.29%	4.59%	5.47%	9.70%	11.66%	5.45%	4.94%
서대문구	2012	58개	43개	42개	42개	47개	55개	49개	36개	51개
		10.60%	9.11%	6.89%	7.85%	8.45%	9.09%	4.04%	2.37%	9.31%
성동구	2013	38개	57개	57개	57개	62개	66개	55개	71개	74개
		3.73%	6.50%	6.54%	6.17%	7.06%	6.57%	5.92%	8.69%	9.31%
성북구	2013	35개	51개	53개	56개	55개	69개	88개	99개	96개
		3.99%	3.97%	4.04%	4.07%	3.77%	4.82%	7.68%	8.31%	7.65%
송파구	2012	22개	32개	33개	36개	31개	28개	29개	25개	19개
		0.95%	2.57%	3.59%	2.50%	1.43%	0.65%	0.76%	0.54%	1.12%
양천구	2013	-	35개	35개	37개	37개	46개	51개	48개	54개
		-	3.01%	2.60%	2.65%	2.55%	2.79%	3.73%	3.37%	3.47%
영등포구	2013	30개	44개	30개	26개	23개	25개	23개	14개	29개
		3.31%	6.11%	2.64%	1.83%	2.01%	2.36%	1.59%	0.92%	1.59%
은평구	2012	30개	30개	32개	30개	30개	46개	42개	36개	33개
		2.44%	2.24%	2.49%	1.76%	1.88%	4.16%	2.96%	1.16%	4.97%
용산구	2012	20개	26개	33개	30개	46개	47개	37개	39개	41개
		2.19%	6.34%	3.38%	2.48%	5.26%	4.93%	4.54%	5.75%	4.56%
종로구	2012	57개	60개	59개	53개	51개	53개	58개	63개	62개
		16.91%	18.83%	21.38%	14.02%	8.70%	11.74%	10.85%	3.77%	4.93%
중구	2013	36개	33개	33개	29개	32개	30개	31개	23개	24개
		10.89%	5.65%	2.81%	10.00%	3.02%	3.62%	5.14%	2.74%	3.47%
중랑구	2013	24개	25개	27개	27개	27개	27개	29개	33개	32개
		22.86%	26.81%	30.23%	30.31%	26.70%	22.05%	27.71%	27.61%	24.16%

출처: 연구자 정보공개청구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양상은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공공 부문에서 특정 정책을 도입·운영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속성의 성격을 기준으로 정책적 공통성과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압력으로 형식적·상징적(decoupling)으로 공통적인 제도도입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운영(coupling)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제도적 압력이라는 공통성 때문이지만, 실제 운영을 통한 지자체별 정책의 토착화에는 서로 다른 영향요인의 정책 특이성, 즉 상이성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행정환경 속에서 대체로 유사한 제도수단이 채택되면, 지자체의 환경에 따라 운영실태, 유사 제도화의 수준(예: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이 있는 양성평등 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인지 실효성 조례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들 구체적인 속성은 상이한 영향요인이 되어 지자체별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에 극명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과 상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동형화론이 있다. Dimaggio and Powell(1983)이 주장한 제도적 동형화는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로 구분되며 제도확산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주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도도입과 확산의 원인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Walker, 1969; Elkin and Simmons, 2005; Weyland, 2005; Berry and Berry, 200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정책별로 변화의 동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준거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파악해 볼 때, 제도도입의 원인은 외부적 영향요인으로서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 도입 강제라

는 외부에 기인하고, 실제 운영과정에는 내부영향요인으로 서로 상이한 행정환경을 위시한 다양한 영향변수라는 내부적인 상황이 양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외부영향요인은 중앙정부 또는 권력기관의 압력(강제적 동형화), 모방 및 경쟁(모방적 동형화), 학습 및 교육(규범적 동형화)가 있지만 이를 상이한 정책운영이라는 결과로 견인하는 데에는 조직(서울시 자치구)이 처한 행정환경과 영향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3. 선행연구

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연구

성인지예산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이슈에 비해 국내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정동규(201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이 호주, 영국 등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뿌리깊은 정책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제도화에 따라 도입논리와 토착화 등 선결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문헌에서 성인지 예산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동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연구대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배준식 외, 2009).

실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양상의 동인을 정부주도형 제도화에 치중한 나머지 동 제도를 양성평등과 타 예산 간 실행관계를 규명하거나, 예산과정의 성인지성 여부를 적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연구원의 현황보고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분석과 정책현상을 설명하는 영향요인 탐색 보다는 주로 제도적 절차

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 매뉴얼, 방법론과 제도적 미비점 분석, 기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분석, 페니미즘 이론에 기반한 담론 연구 등에 치중해왔다. 성인지예산에 관한 선행연구가 외국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해볼 때 그간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무적 관점의 연구이다(배준식 외, 2009; 이명휘,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2020; 전병욱, 2011; 윤영진, 2011; 홍미영·류춘호, 2013). 배준식 외(2009)는 서울시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초로 서울시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며 제반여건과 기본방향 수립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명휘(2010)는 여성빈곤의 심화현상을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예산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개별사례로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성인지적 예산관점에서 조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산지역에 한정하고, 성인지예산 관점보다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집중된 연구내용으로 편중되었으며 개별사례에 부각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2020)은 최근 10년간 성인지 예산제의 제도화 과정, 지자체의 시행방안, 운영방안, 개선방안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동 연구원의 연구는 성인지예산의 기초연구로서 광범위한 국가·지자체 수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분석·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무계에서 필요로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매년 연차 보고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현황분석 중심의 워킹페이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병욱(2011)과 윤영진(2011)은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포함되는

실태를 반영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성, 평가체계의 부재 등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무계의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홍미영·류춘호(2013)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의 연계를 위한 연구를 통해 상이한 두 정책수단을 성인지성 향상이라는 제도목적으로 상호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하여 실무계의 입장에서 정책정향성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이다(2013; 남궁윤영 외, 2015; 박현신·김희경, 2018; 박은순·하태수, 2018; 정선문·한승엽, 2021). 먼저, 남궁윤영 외(2015)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도입 결정요인을 전국단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범위를 2014년 단시간에 한정하고, 예산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렌즈가 부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과관계 변수도 출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볼 수 있다. 박현신·김희경(2018)은 성인지예산 주무부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변수측정을 시도하였다. 특히, 제도운영 주체인 제도인지, 관심, 적절성 인식, 경험여부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측정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단년도 자료에 기반하고, 공무원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2014년에 진행된 설문에 기반함으로써 데이터의 시의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박은순·하태수(2018)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디커플링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산도입 단계-예산심의 단계-예산집행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디커플링을 가져온 요인을 도출하였으나 질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계량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제시라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선문·한승엽(2021)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재정책임성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수혜대상을 기계적으로 구분한 직접목적사업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간접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정책임성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전국단위 지자체가 아닌 7개 특광역시 소속 지자체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도 2015년~2018년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 여성운동 등 여성학과 계몽·운동적 관점에서의 연구이다(김경희, 2003; 차인순, 2005; 임우연, 2008; 배유경, 2010; 이은경, 2014; 주혜진, 2014; 김은희, 2020). 먼저, 김경희(2003)는 성인지예산이 법제화 되기 이전 동 예산 도입을 위한 여성정책예산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성인지적 예산조치를 요구하는 논조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젠더 감수성 및 성주류화 관점에서 여성운동(movement)적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인지적 시각을 갖고 정책집행의 추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와 방안모색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차인순(2005)의 연구, 대전광역시의 성주류화 관점에서 여성정책변동으로 분석한 임우연(2008)의 연구, 인도사례를 통한 여성의

정책참여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민단체 활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배유경(2010)의 연구,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혜진(2014)의 연구, 성주류화의 틀짜기와 구성요소적 분석을 시도한 이은경(2014)의 연구, 김은희(2020)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책의제화 되고 제도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지만 논리구조와 제도도입의 논거가 여성운동학적 편향성으로 인해 다소 당위론적이고 시론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2) 성인지 예산 영향요인 도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성인지 예산 격차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연구목적과 범위 및 방법론에 따라 제도적요인, 정치적요인, 물리적요인, 경제적요인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한 성인지 예산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의 행정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변인을 검토함으로써 성인지예산 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연구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의 차원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성인지 예산 영향요인 변수를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공통성을 갖춘 변수를 정리하여 모델1로 반영하고, 서울시 성인지 예산 격차를 규명하는데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변수를 새로운 모형(모형3)으로 구축하여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표 3〉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변수(영향요인)

구분	저자	변수
정치적 요인	남궁윤영 외(2015)	여성정치인 비율, 선거참여율,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성향, 지자체장 성별
	문광민·임동원(2008)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관련 정책기관 유무
	박은순·하태수(2018)	전담기구 유무
	김수진 외(2019)	여성정치인 비율
	박성애·이령(2021)	주민참여 여부
	도수관·서예정(2017)	여성정치인 비율
사회·경제적 요인	남궁윤영 외(2015)	여성인구비율, 재정자주도
	문광민·임동원(2008)	소득평등도, 노동시장 참여도, 교육 및 기대수명
	김수진 외(2019)	여학생 비율
	성정현 외(2003)	여성 장애인 비율
	정인익(2016)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비율, 성평등 목표 유무
	국회예산정책처(각년도)	여성인구수, 여성농업인수, 여성장애인수, 장애학생수
	박성애·이령(2021)	여성가족 예산비율,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규모
행정적 요인	박은순·하태수(2018)	성인지 예산 매뉴얼 유무, 공무원 인센티브 유무
	김수진 외(2019)	지역 성평등 지수
	국회예산정책처(각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조선주·김영옥(2008)	정보비대칭, 인센티브 유무
	조연숙(2013)	인프라성 사업여부, 주민참여예산 관련성 여부
	도수관·서예정(2017)	제도운영 담당자의 인식, 위원회 유무
제도적 요인	남궁윤영 외(2015)	여성친화도시 지정여부,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업수
	문광민·임동원(2008)	공식적 제도화 유무
	박지민·오영민(2021)	성별영향평가 여부, 여성계획예산
	김혜란(2011)	성별영향평가 여부
	박성애·이령(2021)	실효성향상 근거조항 유무

출처: 연구자 분석

먼저, 정치적 요인과 성인지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수행된바 있다. 문광민·임동원(2008)은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차원의 요인으로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관련 정책기관의 유무를 반영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도화 된 이후에는 남궁윤영 외(2015)가 지자체별 성인지 예산제 결정요인을 탐색적 연구로 고찰하며 여성정치인 비율, 선거참여율, 지자체장 정치성향, 지자체장 성별을 주요변수

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수관·서예정(2017)은 여성정치인비율을 주요 영향변수로 제시했고, 박은순·하태수(2018)는 여성 전담기구 유무를 대입하였다. 이밖에도 김수진 외(2019)는 여성정치인 비율을 반영했고, 박성애·이령(2021)은 주민참여 여부를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영향변수로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차원의 성인지예산 영향요인은 성정현 외(2003)가 여성 장애인 비율을 제

시한 이후, 문광민·임동완(2008)이 소득평등도, 노동시장 참여도, 교육 및 기대수명 등을 변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남궁윤영 외(2015)는 여성인구비율, 재정자주도를 사회경제적 차원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정안의(2016)는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경제기능과 비경제기능부처의 비율, 성평등 목표 유무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김수진 외(2019)는 여학생 비율을 분석에 적용했고, 박성애·이령(2021)은 여성가족 예산비율,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규모를 동 요인의 측정변수로 제시했다.

세 번째로 행정적 차원의 변수는 조선주·김영옥(2008)은 정보비대칭성 여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여부를 분석에 반영했고, 조연숙(2013)이 사업예산 중 인프라성 사업유무, 주민참여예산 관련성 여부를 검토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각년도)는 국가성평등지수, 여성농업인 수, 여성장애인 수, 장애학생 수 등을 성인지 예산제 격차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도수관·서예정(2017)은 제도운영 담당자의 인식, 위원회 유무를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박은순·하태수(2018)는 공무원 인센티브 유무, 성인지 매뉴얼 유무를 행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의 변수는 문광민·임동완(2008)은 동 제도의 공식화를 주요변수로 하여 제도화 여부(조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혜란(2011)은 성별영향평가 여부를 영향변수로 제시했고, 남궁윤영 외(2015)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여부,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업수를 영향변수로 분석했다. 박성애·이령(2021)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 근거조항 유무를 변수로 대입했고, 박지민·오영민(2021)은 성별영향평가 여부와 여성계획예산 여부를 변수로 하여 제도적 차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III. 분석 모델 설계

1. 연구질문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질문을 갖고 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 간 성인지예산 격차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고, 두 번째는 상기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의 개선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 전체 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패널회귀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조작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도입·운영중인 성인지예산제도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동 제도가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이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자치구 25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인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예산대비 성인지예산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관련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포털(www.open.go.kr)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활용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예산 격차의 실증분석을 위해 세 개의 모델을 수립하였고, 각각의 모형에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구축하여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속변수는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

지예산 수용도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 간 성인지 예산격차(Gender Sensitive Budget Gap)를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 전체 일반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을 패널데이터로 구축하고, 이 비율을 자치구별로 설정·구축하였다. 독립변수는 세 개의 모형별로 상이하게 설정하였다. 먼저, 기본모델인 모형1은 선행연구에서 적용하였던 요인을 반영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형1의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 후 독립변수 간의 설명력, 다중공선성, 변수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모형2와 모형3에 반영하였다. 모형2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높이고 모형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노령화지수, 등록장애인 비율, 영유아비율 등을 제외하였고, 행정요

인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제외하는 등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나고 설명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배제하였다. 모형3에서는 모형2의 기준변수에 오늘날 서울시 행정환경을 반영한 변수를 추가하여 수립하였다. 정치요인에서 선거참여율, 단체장 정치성향을 반영하고, 사회·경제적요인에서 소득수준, 행정요인에서 성평등 행정지수, 전담조직 유무, 제도요인에서 성인지예산제도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양성평등조례의 제정연도를 중심으로 한 학습효과, 성인지 예산제 직접목적사업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 등을 반영하고 통제변수로 인구수, 공무원수, 자치구 면적을 고려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변수선정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성인지 예산 격차 (Gender Sensitive Budget Gap)
정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정치인 비율 여성 유권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 유권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 유권자 비율 단체장 정치성향 	
사회·경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노령화지수 등록장애인 비율 영유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소득수준 	
행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공무원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행정지수 전담조직 유무 시민단체 수 	
제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간접목적사업 수 	
통제요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수 공무원수 면적 	

주: 성평등 행정지수: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및 여성 주민센터장 비율을 지표화한 수치.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격년 조사·발표
출처: 연구자 분석

3. 변수 및 가설 설정

이 연구는 연구질문인 성인지예산 격차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성인지예산액과 일반예산 간 비율의 격차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격차를 성인지 예산수용도로 간주하지만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성인지 예산격차로 검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성인지 예산제가 도입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별 성인지예산 격차를 직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정책의 형식적 도입과 실질적 운영여부 파악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성인지 관련 공공서비스 영향요인 수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독립변수는 정치요인, 사회·경제요인, 행정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망라적으로 구축하고 각 요인별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최종 모델인 모형3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여성정치인 비율⁶⁾, 여성 유권자 비율, 단체장 정치성향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자치구 내 여성정치인 비율이 높을수록 성평등 예산인 성인지예산에 관심이 많고, 여성유권자 수 역시 정치적으로 성인지예산을 강화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단체장의 정치성향도 새로운 혁신정책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차원의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남궁운영 외, 2015; 임성일 외, 2013; 황소하·엄태호, 2012)에서 도출하였다.

- **가설 1-1:** 여성정치인 비율이 높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1과 모형2).
- **가설 1-2:** 여성유권자 수가 많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1과 모형2).
- **가설 1-3:** 단체장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요인은 여성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경우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을 것(남궁운영 외, 2015)이며, 자치구의 재정력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예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정광호, 2010)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비율은 해당 자치구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행정수요 정도에 따른 예산 배분 영향여부를 파악하고자 설정하였다. 즉,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부부분의 책임과 의미에서 이와 관련한 지표가 높은 경우 행정수요가 노출되고 이를 예산과정에 침윤시켜 예산과정이 곧 정치과정이라는 Wildavsky(1986)의 예산형성과정의 정치행정적 배분과정을 강조하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여성장애인 비율은 노원구가 44.8%가 가장 높았고, 금천구는 39.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자치구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6) 여성정치인 비율은 서울시 각 자치구의 구의원 중 여성비율으로 측정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소득수준은 소득이 높을수록 시민차원의 행정수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문우진, 2009) 정책다양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지자체 소득 대리변수인 지역내총생산 지표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였다.

- **가설 2-1:** 여성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1과 모형2).
- **가설 2-2:**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1과 모형2).
- **가설 2-3:** 여성장애인 비율이 높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1과 모형2).
- **가설 2-4:**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행정요인은 서울시 자치구의 '성평등 행정지수'와 전담조직 유무로 구성하였다. 먼저, 성평등 행정지수는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 조사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비교할 수 있는 지수이다. 성평등 행정지수는 행정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현황과 인식이 반영된 조사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서울시 자치구 관내 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 주민센터장 비율을 지표로 평가한다. 기준점수를 1점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준 점수인 1점을 달성한 것으로 측정되는 구조이다⁷⁾. 성

평등 행정지수는 2008년부터 격년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미비한 데이터는 서울시와 서울 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조사하는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통계(각년도)'를 통해 확보하였다.

한편, 전담조직은 정책추진의 실효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담조직은 타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인력을 구축·배치하고 해당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담조직이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발전을 담보하는 요건(김석은, 2018)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인지예산 격차를 반영한 수용도는 서울시 자치구의 전담조직 유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조직은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성 주류화 태스크포스 등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요인 중 유관 시민단체에 따라 성인지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구성원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작용을 의미한다(허성욱, 2018). 특정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행정수요를 발굴하고, 행정 감시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수결원칙과 대의제원리에 바탕을 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에 집중된 이익이 과다대표되고, 분산된 다수의 이익은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

7) 이상의 기준에 따라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성평등 행정지수는 서초구(0.996), 관악구(0.987), 강동구(0.984), 강남구(0.983), 영등포구(0.981), 동작구(0.967), 송파구(0.923), 구로구(0.920), 양천구(0.886), 중랑구(0.878), 노원구(0.877), 은평구(0.858), 성동구(0.851), 강서구(0.850), 중구(0.844), 광진구(0.727), 강북구(0.769), 성북구(0.765), 서대문구(0.750), 도봉구(0.733), 광진구(0.727), 마포구(0.704), 용산구(0.696), 종로구(0.652), 동대문구(0.535) 순임

단체는 이와 같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이익들이 정치과정에서 정당하게 주장되고 구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행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김강현, 2021; 권경환, 2007).

- **가설 3-1:** 성평등 행정지수가 높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 **가설 3-2:** 전담조직이 존재하면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 **가설 3-3:** 유관 시민단체가 많을수록 성인지예산 격차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제도요인은 양성평등조례의 제정 이후 학습효과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직접목적사업 비율로 설정하였다. 양성평등조례는 성주류화 정책의 대표적인 제도적 도구로서 성평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양성평등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제도로입시기에 따른 학습효과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조례제정 이후 시행경험과 성인지 관련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자치구별 편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변수 투입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양성평등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의 도입시기는 03년(강북구) ~ 16년(강서구)까지 약 13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제도로입시기에 따른 학습효과는 제도로 도입 이후 제도시행 경험치가 학습효과로 축적되어 성인지예산제의 운용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중 간접목적사업 비율을 신규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여성안

전, 양성평등,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을 제도목적으로 규정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자치구별로 성인지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거시적 차원의 간접목적사업이 많을수록 해당 지자체의 성인지예산 격차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수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성인지 사업을 발굴·운용하며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제도 커플링(coupling) 차원에서 다양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하는 것을 변수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 **가설 4-1:** 양성평등조례를 제정한 지 오래된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격차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 **가설 4-2:** 성인지예산제 대상사업이 많은 지자체의 성인지예산 격차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 **가설 4-3:** 성인지예산 사업의 간접목적사업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격차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모형3).

통제변수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편차를 갖고 있는 인구수, 공무원 수, 면적규모 등을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의 선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수는 바그너의 법칙(Wagner's law)에 따라 인구증가, 산업화의 진전,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공 부문이 팽창하여 재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론으로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인구 규모는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의 선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무원 수 역시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근거하여 공무

〈표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측정치표	자료취득	
종속변수	성인지 예산 격차	성인지예산/전체예산 × 100	e재정고	
독립 변수	정치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의원수/전체의원수 × 100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통계
		여성 유권자 수	여성 유권자수/전체유권자수 × 100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통계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1, 보수:0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사회 경제	여성인구 비율	자치구 여성인구/자치구 전체인구 × 100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통계
		재정자주도	(자치구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e재정고
		여성장애인 비율	자치구 여성장애인수/자치구 전체장애인수 × 100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노령화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장애인 비율	자치구 등록장애인수/자치구 전체인구 × 100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영유아 비율	자치구 0~5세 인구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소득수준	지역내 총생산/인구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행정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공무원수/전체공무원수 × 100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성평등 행정지수	기준점수 1점(여성비율 50% 이상시)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담조직 유무	유:1, 무:0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유관 시민단체 수	수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제도	양성평등 조례	학습효과 연도 (2021~제정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개수	자치구별 예산서	
간접목적사업수		개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통제변수	인구수	명(log)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공무원수	명(log)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면적	m ²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e재정고, 서울시 성평등활동 지원센터,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원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재원을 동원하려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면적을 통제하였다. 이는 행정구역 면적에 따른 인구의 비율, 인구밀도 역시 바그너의 법칙과 관련되어 전위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IV. 실증분석

1. 분석방법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3년~2021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영향변수 도출을 위한 모델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도출한 모형1, 다중공선성을 제거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한 모형2, 이론적·적실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한 모형3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작업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 정규성을 확인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였고, 패널 분석의 타당성 여부는 우드리지 검정(Woodridge)과 왈드검정(Wald)을 통해 확인하였다. 통상적인 회귀모형에서는 오차항이 등분산임을 가정하고 적절한 통계적 추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차항은 이분산일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이분산 검정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패널자료의 경우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정을 위배하거나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Pooled OLS로 추정할 경우 일치 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다년도로 구축된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OLS를 적용하면 불편추정량이 되지 못하고, 관찰수가 증가하더라도 일치통계량의 성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Wald타입의 하우스만 검정(Hause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은 확률효과모형이 옳다는 귀무가설하에 귀무가설이 맞다면 확률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이고, 귀무가설이 틀리다면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각 모형에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2.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총량적으로 분석한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기술통계량

변수명	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여성정치인 비율		225	11.72	32.81	24.37	17.32
여성유권자 비율		225	0.49	0.52	0.51	0.0063
단체장 정치성향		225	0	1	0.87	0.33
여성인구 비율		225	0.48	0.53	0.51	0.0089
재정자주도		225	38.22	79.37	54.37	8.27
여성장애인 비율		225	38.73	45.06	41.89	1.28
영유아 비율		225	2.24	4.31	3.56	0.128
등록장애인 비율		225	2.82	5.75	4.05	0.0076
노령화지수		225	82.2	255.9	149.4	12.22
소득수준(log)		225	14.83	18.09	16.57	1.55
여성공무원 비율		225	42.11	57.89	54.32	6.27
성평등 행정지수		225	0.367	0.996	0.677	0.417
전담조직		225	0	1	0.63	0.48
시민단체수		225	0	17	3.56	4.69
학습효과		225	6	19	12.08	4.39
대상사업수		225	11	99	37.48	13.78
간접목적 사업수		225	7	34	23.21	9.18
인구수(log)		225	11.79	13.43	12.91	11.72
공무원수(log)		225	6.96	7.47	7.19	4.95
면적		225	9.96	46.98	24.21	9.12

출처: 연구자 분석

이 연구의 질문인 서울시 자치구 간 성인지예산 격차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형1은 정치요인 2개(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유권자비율), 사회경제요인 6개(여성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노령화지수, 등록장애인 비율, 영유아 비율), 행정요인 1개(여성공무원 비율), 제도요인 1개(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등 총 10개의 변수를 대입하였다. 모형2는 정치요인 2개(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유권자 비율), 사회경제요인 3개(여성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제도요인 1개(양성평등조례) 등 총 6개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7〉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격차와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표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GLS	고정효과	GLS	확률효과	GLS	확률효과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정치 요인	여성정치인 비율	0.5937*** (0.0557)	0.4423*** (0.1592)	0.4175*** (0.0963)	0.6591*** (0.0693)	0.3342*** (0.1121)	0.4191*** (0.0578)
	여성유권자 비율	1.3283 (1.1432)	11.3745* (3.5225)	1.4117 (1.4221)	8.4587* (2.6812)	6.3254* (1.9277)	8.7688* (2.4523)
	단체장 정치성향	-	-	-	-	0.3261 (0.1740)	0.4622 (0.1773)
사회 경제 요인	여성인구 비율	2.3686* (0.8492)	4.8907** (1.4944)	3.4582** (1.1163)	4.2374** (1.2123)	1.7932** (0.5907)	2.4217** (0.6918)
	재정자주도	-0.0316 (1.4294)	9.6714** (2.1178)	1.2412 (1.4624)	8.4528** (2.2267)	2.6956** (1.6783)	8.5933** (2.4589)
	여성장애인 비율	0.3242* (0.1168)	1.6834 (0.3753)	0.4217* (0.1481)	3.5574* (0.6920)	0.2247* (0.4428)	0.3692* (0.4748)
	노령화지수	-0.1789 (2.3462)	-4.5246 (2.6871)	-	-	-	-
	등록장애인 비율	-0.1419 (0.0578)	0.0213* (0.1348)	-	-	-	-
	영유아 비율	0.0029 (0.0003)	0.0021 (0.0002)	-	-	-	-
	소득수준	-	-	-	-	1.5638* (0.1632)	3.2151* (0.2351)
행정 요인	여성 공무원 비율	0.1321 (1.1174)	1.2453 (0.2450)	-	-	-	-
	성평등행정지수	-	-	-	-	3.2537** (2.1446)	4.7872** (1.8144)
	전담조직 유무	-	-	-	-	2.9254** (1.0177)	3.1173** (1.6760)
	시민단체 수	-	-	-	-	2.4425* (1.1263)	2.6854* (1.3125)
제도 요인	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7.8245** (3.6871)	10.3321** (5.5623)	8.3266** (3.8183)	12.32366** (4.9831)	6.4247** (3.2241)	6.9254** (3.4346)
	간접목적사업 비율	-	-	-	-	-2.4437** (0.7729)	-3.1469** (1.3214)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	-	-	-	-	-3.3373** (0.6634)	-3.21742* (0.4314)
통제 변수	인구수	-	-	-	-	0.0019* (0.0006)	0.0003 (0.0117)
	공무원수	-	-	-	-	-0.0112 (0.0334)	0.0178 (0.0251)
	면적	-	-	-	-	-0.0362 (0.0211)	0.0027 (0.0089)
상수	-1.1763	18.3241	24.3347	26.1724	-11.6172	12.1907	
N of observations	225	225	225	225	225	225	
F-value		F=8.12***					
Wald chi2 value	Wald chi2 =127.83***	-	Wald chi2 =83.56***	Wald chi2 =131.25***	Wald chi2 =72.28***	Wald chi2 =134.23***	
R ²	-	0.4936	-	0.6697	-	0.7234	

출처: 연구자 분석

주: * P<0.1, ** P<0.05, *** P<0.01

모형3은 정치요인 3개(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유권자 비율, 단체장 정치성향), 사회경제요인 4개(여성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비율, 소득수준), 행정요인 3개(성평등 행정지수, 진담조직 유무, 시민단체 수), 제도요인 2개(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 직접목적사업 수), 통계요인 3개(인구수, 공무원수, 자치구면적) 등 총 15개로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이 세 개로 구축한 모형별로 모형적합성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으로 측정하고, 영향요인 도출은 GLS 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모형 1은 이분산성(chi2 = 996.14; Prob > chi2 = 0.0000), 자기상관성(F = 12.682; Prob > F = 0.0010)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오차항의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성 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어 모형1은 GLS회귀분석을 통해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패널분석 결과값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chi2 = 18.34; Prob > chi2 = 0.0008)로서 임의효과보다 고정효과에 의한 설명력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영향요인으로 구성된 모형1에 대한 GLS회귀분석과 고정효과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9.3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2는 이분산성(chi2 = 787.34; Prob > chi2 = 0.0000)과 자기상관성(F = 13.241; Prob > F = 0.0010)이 모두 통계적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모형1과 마찬가지로 GLS 회귀분석 값과 패널분석 결과값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하우스만 검정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의 설명력은 66.97%로 도출되었다.

모형3은 이분산성(chi2 = 682.31; Prob > chi2 = 0.0000)과 자기상관성(F(1, 24) = 18.324; Prob > F = 0.0010)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패널분석을 활용할지를 선택하기 위한 하우스만 검정으로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3은 GLS 회귀분석과 확률효과모형을 모두 제시했고, 동 모델의 확률효과모형 설명력은 72.34%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각 요인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요인의 영향요인 변수 중 '여성정치인 비율'은 모형1~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치인(구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성인지예산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정치적으로 여성정치인이 많을수록 여성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성인지예산에 적극적이며 혁신적 성격의 예산정책인 성인지예산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유권자 비율은 모형1과 모형2의 GLS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모형1)와 확률효과(모형2 및 모형3)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유권자 비율이 높은 자치구가 성인지예산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성인지예산 비율이 낮아져 그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3에서 새롭게 추가한 단체장 정치성향 변수는 GLS와 확률효과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요인의 변수가 성인지예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인구비율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형1~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정책에 관심이 높으며, 이는 정치인의 여성예산 증가 및 불균형한 부문을 바로잡는 행정수요를 가져와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추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자주도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성인지 예산액 비율이 일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모형1과 모형2의 GLS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형1의 고정효과와 모형2의 확률효과, 모형3의 확률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즉,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가 성인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운용하고 있음을 반증할 수 있다 하겠다. 여성장애인비율과 성인지예산과의 관계는 모형1의 GLS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GLS와 고정효과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 비율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성인지예산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자치구별 등록장애인 비율은 모형1에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변수는 GLS분석에서 성인지예산 규모와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회귀계수값이 0.0213(표준오차 0.1348)로 성인지예산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령화지수 변수는 모형1에서 GLS와 고정효과모형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예산에 통계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성인지예산 격차는 모형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에서 성인지예산이 높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자치구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혁신적 예산정책인 성인지예산에 관심이 많고, 소득재분배와 분배적 형평성을 가져오는 동 제도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는 재정수입이 높아져 자치구의 재정자주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쳐 상호영향을 주는 변수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행정차원의 요인항목에서는 성평등행정지수, 전담조직여부, 시민단체 수를 변수에 투입하였다. 먼저, 각 자치구별 성평등행정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형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인지예산 전담조직 변수는 모형3의 GLS와 확률효과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별 시민단체 수와 성인지예산의 관계는 모형3의 GLS와 확률효과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제도요인의 변수는 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직접목적사업 비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등을 도입하였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별로 양성평등조례의

8) 혁신적 정책과 소득수준 간 관계는 재정부담, 미래재원확보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장석준 외(2015)의 연구외에도 사회혁신이 주어진 도시 간 환경격차에 의해 차별성을 갖는다는 Social Innovations in the Urban Context(2018)(도시의 맥락으로 본 사회혁신) 윌코 프로젝트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학습효과 변수는 모형1~3에서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GLS분석 및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별로 양성평등조례의 제정 이후 시간이 오래될수록 해당 제도에 대한 노후가 축적되고, 관련정책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학습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관련된 정책 리질리언스(policy resilience)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성인지 예산의 실질적 수용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성인지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운영되는지 여부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의 직접목적사업 비율을 지자체 모형3에서 새로운 변수로 투입한 결과 GLS 분석과 확률효과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적인 성인지적 환경조성을 위해 간접목적사업 비율이 높은 경우 자치구의 성인지예산 규모가 높을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간접목적사업이 높아질수록 자치구의 성인지 수용도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직접적인 정책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하는 간접목적사업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는 실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서울시 자치구별로 성인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직접목적사업 보다는 간접목적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예산을 형식적으로 포함시킨 사례가 성인지수용도 와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남북 경험 편람제작 및 배포(서울시 본청),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지원(서울시 본청), 구립도서관 환경개선(강남구), 가로수 정비사업(서초구) 등은 성인지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 변수를 모형3에서 새로운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자치구별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수는 성인지 예산의 규모를 높이는데 음(-)의 방향성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성인지예산비율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앞에서 설정한 가설4-3과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자치구의 성인지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성인지예산대상사업의 물리적 숫자와 실질적인 제도적 커플링을 의미하는 성인지예산 수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며, 예산비중과는 큰 관련없이 형식적·홍보성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모형3에서는 자치구의 인구수, 공무원수, 면적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인구변수만 GLS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회귀계수는 0.0019)로 미약이 도출되었고, 자치구의 공무원 수 및 자치구 면적변수는 통계적으로 함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면서 성인지 정책의 도입과 확산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일찍이 Wildavsky(1964)는 예산을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블랙박스를 지적한 바 있다. 과연 우리사회에서 성인지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성인지 예산격차에 투영된 블랙박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예산은 지역사회의 정책현실이자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김강현, 2021). 우리사회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현실인식이 반영된 산물이 바로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패를 조망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성인지 예산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분석대상으로 각 자치구별로 2013년부터 2021년 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 성인지 예산 격차와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 성인지예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세 가지로 설정하여 각 모형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1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변수로 제시되었던 주요변인을 정치요인, 경제·사회요인, 행정요인, 제도요인별로 구분하여 GLS와 고정효과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성 정치인비율, 여성인구, 양평평등조례 학습효과 요인은 GLS와 고정효과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여성유권자,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등록장애인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노령화지수, 영유아비율, 등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되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었다. 모형2에서는 모형1의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을 제거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총 7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변수 중 GLS 분석과 확률효과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된 변수는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인구, 여성장애인비율, 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등이었고, 재정자주도와 여성유권자 비율 변수는 GLS 분석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는 기존 변수 6개와 새로운 영향변수 6개를 반영하여 총 12개의 변수를 대입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변수 중 유의미하게 분석된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유권자 비율, 여성인구, 재정자주도, 양성평등조례 학습효과 외에 신규변수 중 5개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정치요인의 단체장 정치성향은 GLS와 확률효과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요인의 소득수준변수에서 GLS 및 확률효과모형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소득수준(지역내 총생산)인 재무적 유동성이 높을수록 성인지예산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성평등 행정지수가 높을수록 성인지예산이 높고, 전담조직과 시민단체와 성인지예산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지 대상사업수 변수는 음의 방향성을 보임으로써 성인지 대상사업이 많을수록 성인지 예산 격차는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수가 많을수록 관련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성인지예산 중 간접목적사업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어 직접목적 아닌 간접적 형태의 거시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업의 경우 성인지예산에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제도도입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과 요인구분이 성인지예산의 내용적 측면을 규명하는 적합한 연구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는 현실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동 제도가 도착화되기 위해서는 상이한 영향요인에 대한 차별성과 특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다양한 영향요인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실무계에 주는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이 연구의 기여는 기존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현상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분석사례가 정책영향요인연구에 적합한지 판별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선형적으로 인식해왔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셋째, 성인지 예산제도가 표면적으로 운영(decoupling)되지 않고 제대로 정착(coupling)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수나 대상예산규모에만 치중하는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듯이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 대상사업수와 성인지예산 수용도와는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제도시행 초기인 2013~2015년 기간 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성인지 사업과 관련없는 일반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 성인지 예산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보고하는 행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표면적이고 양적인 성인지 예산의 확대보다는 자치구의 성인지 행정수요를 반영한 내실있고 질적인 성인지 예산의 확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능력과 담당자의 인지능력이 성인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통계의 구축, 교육, 성인지 수요발굴,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의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존의 정책연구들이 답습한 차원별 분석방법을 이 연구도 유사하게 적용했다는 점이다. 비록, 모형별로 선행연구로 분석한 기본모형, 이를 방법론적으로 보정한 수정모형, 새로운 변수를 투입한 신규모형 등 3개의 모형으로 분석에 활용했지만 데이터의 접근·수집의 한계로 선명성 있는 영향변수를 도출하였는지 연구의 독창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한계는 제도운영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해 포괄적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예상 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로운 변수를 도출하여 풍부한 설명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 노령화지수, 영유아비율, 단체장 정치성형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인지 대상사업 수, 성인지예산 중 간접목적사업 예산 비율 등은 예상과 달리 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정책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어떤 정보와 의사결정이 오고 가는지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실제 운영과 괴리된 데이터의 한계에 기인한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해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내용적 측면의 영향요인과 감추어진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영향요인을 검증하여 서울시 자치구 스스로가 예산지출자(spender)이자 재정수호자(guardian)로서 지자체별로 행정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한 재정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현실인식과 대응이라는 무거움이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권경환, 2007, “기초자치단체 예산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분석”, 『한국행정논집』, 119(3): 661~684.
- 김강현, 2012, “행정제도의 확산과 성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20, “노사협력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입법과 정책』, 12(3): 117~138.
- _____, 2021, “지방자치단체 공직부패방지 정책수단 확산 연구: 사건사 분석을 통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3): 3~38.
- 김경희, 2003,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1): 5~41.
- 김석웅, 2018,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적 책임활동의 효과성 검증: 패널분석”, 『정부학연구』, 24(3): 113~135.
- 김석준 외, 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 김수진 외, 2019, “시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1): 1~28.
- 김은희, 2020, “성인지 예산, 법제화 이후의 현재에 관한 재검토: 지역으로부터의 실험에 비추어”, 『젠더법학』, 11(2): 194~203.
- 김진 외, 2009,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민사회 참여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3차 성주류화 포럼 발표자료.
- 김혜란, 2011,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젠더와 문화』, 4(2): 167~196.
- 남궁윤영 외, 201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89(2): 5~35.
- 노용진 외, 2003, “혁신적 인사관리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경영학 연구』, 25(1): 101~121.
- 도수관·서예정, 2017,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1): 227~256.
- 문광민·임동완, 2008,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 17(1): 133~161.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4): 327~421.
- 박지민·오영민, 2021,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예산요인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6(3): 55~81.
- 박수범·김희경·권도연, 201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은순·하태수, 2018, “성인지 예산제도 디커플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141~173.
- 박성애·이령, 2021,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박종철·금지덕·하현상, 2016,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30(3): 123~154.
- 박현신·김희경, 2018,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 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제도운영의 주도부서가 제도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2(2): 267~302.
- 배유경, 2010, “인도의 성인지예산 제도화와 여성의 참여: 지역 여성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9(1): 197~228.
- 배준식 외, 2009,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성정현 외, 200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취업문제”, 『비판사회정책』, 15: 163~196.
- 이명휘, 2010, “국내외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 현황 및 평가지표 분석”, 『여성경제연구』, 7(1): 49~76.
- 이은경, 2014,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에 대한 분석: 성 주류화의 틀짜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2): 397~429.
- 이정철·허만형, 2012,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95~119.
- 이중범, 1986, “기술사용조직에 주어지는 유인체계와 기술적합성”, 『국민과 정부관료제』, 75~99.
- 이형우·김규욱, 2011,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주요

- 국 사례 및 우리나라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1): 171~210.
- 임우연, 2008, “지방정부 여성정책변화의 성과와 한계: 성주류화 관점에서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3): 219~242.
- 임성일, 2011,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3): 59~92.
- 윤영진, 2011, “도입단계 성인지 예산서의 평가와 발전단계”, 「한국행정논집」, 23(2): 553~576.
- 장석준·노종호·김대진,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와 정책확산의 양상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조례를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21(3): 221~260.
- 조선주·김영옥,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75(2): 27~60.
- 전병욱, 2011, “성인지 결산서의 분석을 통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조세와 법」, 4: 29~57.
- 정광호, 2010,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역량의 연관성 탐색: 재정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4): 333~374.
- 정동규·권순민, 2010,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예산제도 도입방안과 과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 정선문·한승엽, 2021, “성인지예산제도와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46(1): 83~136.
- 정안의, 2016, “한국 성인지 예산의 추이분석: 성 평등 목표와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32(3): 1~31.
- 조연숙, 2013,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 주혜진, 2014,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체계화 모색: IPA를 통한 지역센터전문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택 분석”, 「사회과학연구」, 25(4): 425~454.
- 차인순, 2018, “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여성연구」, 97(2): 260~29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각 연도,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일보, 2018. 4. 15.,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하성욱 기고.
- 홍미영·류춘호, 201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 강화”, 「지방정부연구」, 17(1): 83~103.
- 황소하·엄태호, 2012, “지방정부 지출의 공간적 상호작용: 지역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의 비교경쟁”, 「한국행정학보」, 46(1): 313~343.
- Berry. F. S. and Berry. W. D., 1990, “State Lottery Adoption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395~415.
- _____, 2007, “Innovation and Diffusion Models in Policy Research”,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223~260.
- Chandler. A., 1962,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DiMaggio. P. J. and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 *The Journal of Politics*, 25(2): 265~289.
- Donaldson. L., 1966, *For Positivist Organization Theory*, London: Sage.
- Elkins. Z. and Simmons. B., 2005, “On Waves, Cluster and Diffusion: A Conceptual Framework”,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8(1): 33~51.
- Giladi F., 2016, *Four Ways We can Improve Policy Diffusion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pperson. R. L., 1991, *Institution, Institutional Effects, and Institu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stova T. and Roth. K., 2002, *Adoption of an Organizational Practice by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stitutional and Relational Effect*.
- Milton. C. R., 1979, *Human Behavior in Organization*, Englewood Cliff. N.Y.: Prentice-hall.

- Perrow. C. B., 1967,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Organizations*, University of Wisconsin.
- Saraaf. F., 2003, *Gender-Responsive Government Budgeting*, IMF Working Paper.
- Walker. J. L., 1969,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Review*, 63(3): 880~889.
- Wayland. K. G., 2005, *Bounded Rationality and Policy Diffusion: Social Sector Reform in Lat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rld Economic Forum, 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WEF Annual Report.
- Woodward. J., 1965,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 Tillamn. R. O., 1970, "Black market bureaucracy", *Political Corruption: Reading in Comparative Analysis*, 62~64.
- Walker. J. L., 1969,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880~899.
- Weyland. K. G., 2005, *Bounded Rationality and Policy Diffusion: Social Sector Reform in Lat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dward. J., 1965,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 월드뱅크 <http://www.worldbank.org>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s://www.data.seoul.go.kr>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6월 20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22년 8월 29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23년 9월 30일

「서울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2001년	1월	4일	제정
2002년	1월	3일	개정
2003년	1월	2일	개정
2003년	7월	4일	개정
2003년	9월	18일	개정
2004년	2월	10일	개정
2004년	6월	15일	개정
2004년	12월	30일	개정
2005년	4월	20일	개정
2005년	10월	18일	개정
2006년	11월	21일	개정
2007년	9월	10일	개정
2008년	5월	27일	개정
2010년	3월	26일	개정
2010년	5월	28일	개정
2010년	6월	16일	개정
2010년	9월	30일	개정
2010년	12월	29일	개정
2012년	3월	29일	개정
2014년	5월	14일	개정
2018년	5월	24일	개정

I. 투 고

1. 원고의 대상 및 종류

- 1) 「서울도시연구」는 서울 및 도시관련 분야의 연구성과를 수록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 2)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본지에 투고한 후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다.

2. 원고의 분량

- 1) 논문의 분량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A4 용지 15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원고의 작성

- 1)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2) 원고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논문의 첫 페이지에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각주에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직급)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1인일 경우 그 저자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소속 뒤에 기재하며,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5)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 없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6)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원고의 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의 주소·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의 주소·연락처 등도 기재해야 한다.
- 4)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 및 홍보를 위해 일부 인용 및 활용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6) 본지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시 표절검증절차를 운영한다.
 - (1) 본지 편집위원회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표절률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판명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II. 원고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구성

-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 2) 영문논문의 구성
- (1)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2. 논문제목 표기
- 1) 논문제목은 연구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저자명 아래에 영문제목을 작성한다.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eoul).
- 2) 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명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3.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제목 밑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제목 밑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표기 방법
- (1) 영문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성을 기재한다.
(예: Gil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데점(.)을 넣어 구분한다.
4.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표기 방법
- (1)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 (3)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4)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 (5) 이상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저자가 1인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②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③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5.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6. 주제어(Key Words)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5개 내외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7. 본문 작성방법

- 1) 본문은 논문의 통상적인 전개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 2) 원고의 읽기와 교정이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우 및 행간에 여백을 두도록 한다. 논문의 요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2단 편집으로 한다(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0.5pt.,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8%로 하고, 용지 종류는 A4(국배판), 용지여백은 위 32mm, 머리말 12.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1mm, 아래쪽 32mm, 꼬리말 12.5mm로 한다).
- 3)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 4) 본문의 단락 표기는 왼쪽 들여쓰기 2칸으로 한다.
- 5) 기타 사항은 각 항목별 세부작성방법에 준한다.

8. 표기 언어 및 표기 방법

- 1) 국문읽고의 경우,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및 외래어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2) 목차 및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 전개는 I.,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9. 도표 및 사진

- 1) 표번호는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 2) 그림번호는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 3) 사진번호 표기방법은 그림번호 표기방법에 준한다.
- 4)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5)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0. 인용문헌,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

1) 인용문헌

- (1) 본문 중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 ① 단독연구 : 장병권(2000)에 의하면 ... , Smith(1992: 82~83)는 ... , 이들 연구(유승호, 1996; 임창호, 1998)에 의하면 ... , ... 라는 견해도 있다(황혜선, 1999: 25~27).
 - ② 공동연구(2명인 경우) : 김주찬·민병일(2003)에 의하면 ... , Getis and Ord(1992)는 ... , ... 라고 말하고 있다(Howe and Linaweaver, 1967; Weeks and McMahon, 1973)
 - ③ 공동연구(3명 이상인 경우) : 이동필 외(2001)는 ... , ... 라고 지적하였다(Maidment et al., 1985), Maidment et al.(1985: 50~52)은 ...
- (2) 국문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다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기재한다. 중국,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 저자명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 (3) 인용문헌은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각주

- (1)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 (2) 논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한다.
- (3)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書名),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고,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 (4)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abc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 (5)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6)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7) 이상 참고문헌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국문단행본 및 보고서

노용희, 1987,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녹원출판사.

고재경·정규호·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1992,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

② 국문논문

최상철, 1992, “동북아 연안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협력”, 「환경논총」, 30: 65~106,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운수·정숙영·조용현·김경배, 2007,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8(1): 107~125.

김미연, 2005, “삼성동 코엑스 복합 문화공간 확장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③ 영문논문

Moss, M. L., 1987, “Telecommunications, World Citi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24(6): 634~546.

Waket, D. and Odam, S., 1982, “The older women: Increase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3(3): 34~35.

④ 영문단행본

McShane, W., 1990, *Traffic Engineer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leffer, Jeffrey and Salancik, Gerald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herif, C. C., Sherif, M., and Nebergalle, R. E., 1965,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The social judgment-involvement approach*, Philadelphia: W. B. Saunders.

⑤ 번역서

송경현·박용훈(역), 1994, 「교통과 도시계획」, 서울: 명보문화사(Blunden, W. R. and Black, J. A., 1984, *The Land-use/Transport System*, 2nd ed., New York: Pergamon Press).

⑥ Internet Web 자료(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통계연보 2003을 참고하였을 경우)
<http://www.metro.seoul.kr/kor2003/main/index.html>

11. 감사의 말 등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 2) 논문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및 최종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Ⅲ. 논문 심사

1. 심사대상

- 1)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절차

- 1) 1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 2) 재심사 :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 후 재심사를 수행한다.

3.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편집위원을 선정한 뒤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등을 검토해 투고논문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전공자를 추천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추천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한다.
- 4) 만일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다른 편집위원이나 전공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서울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7)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8)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온 논문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의뢰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9)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의 신분은 심사위원 상호간 및 투고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논문심사 기준

-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① 논문 주제의 적절성
 - ②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 ④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⑤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 ⑥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⑦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 ⑧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익명성

-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판정

- 1) 1차 심사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1) '현 상태 게재'는 원고 내용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2) '수정후 게재가'는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3) '수정후 재심사'는 논문이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4) '게재불가'는 본지의 논문으로 게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2) 재심사 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의 이유와 근거를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에 작성, 소정의 기간 내에 본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의 처리

- 1) 논문심사결과가 나오면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판정과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해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동일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현 상태 게재,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또는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 ②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2) 심사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올 경우 차악(次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현 상태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 (3)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올 경우 재심사는 1차 심사 때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1차 심사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수행한다.
 - (4)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논문심사결과 처리 일람표 참조).

- (5) 1차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 판정이 나와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수정보완 여부 확인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현 상태 게재’ 판정이 나온 논문이라도 수정보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른다.
- 3)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경우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정 확인과정에서 분명한 이유와 근거 없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지적사항대로 원고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 4)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6)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7) 논문의 심사평은 필요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 8) 논문심사결과 처리절차를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심사 결과			재심사 결과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함
			-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함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8. 연구부정 행위의 처리

- 1) 투고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계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3)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9. 투고논문 심사위원 위촉, 심사, 수정보완, 수정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투고논문이 서울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내로 연장한다.
- 2) 1차 심사: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2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재심사: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4) 논문 수정보완: 1차 심사 및 재심사 결과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외하고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나온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에 수정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계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5) 논문 수정확인: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보완한 논문에 대해 수정확인을 해야 하는데, 1차의 경우 10일 내에, 그 이후에는 7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얼마간 연장할 수 있다.
- 6) 수정확인 결과에 따른 논문 수정보완: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확인 및 검토의견에 따라 1주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계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IV. 발 간

1. 원고 교정

- 1)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심사 결과 및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 결과 '현 상태 게재'로 판정난 논문에 대해 최종 교정을 담당한다.
- 2) 본지 편집위원회는 오탃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원고의 게재

- 1) 편집위원회에서는 교정 및 편집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호 발행일 이전 적절한 시기에 게재 원고를 확정해야 한다. 논문 수정 및 편집상의 이유로 해당 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 2) 원고의 게재순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확정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지원비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본지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발행 부수

-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서울도시연구」 연구윤리규정

2009년 6월 1일 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5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서울도시연구」에 제출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3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서울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논문심사 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7조 (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장 저자 윤리지침

제11조 (저자의 의무) 연구자는 학문추구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3조 (자기표절)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4조 (이중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타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조 및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연구자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18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본지 편집위원회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전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간 대상 연구를 투고할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서약) 연구자는 저자 윤리지침에 따라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20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투고논문에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